

경기문화재단 공정거래 자율준수프로그램(CP) 운영규칙

제정 2024. 11. 11. 규칙 제528호

제1장 일반원칙

제1조(목적) 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 운영규칙(이하 “CP 규칙”이라 한다)은 경기문화재단(이하 “재단”이라 한다)의 임직원들이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공정거래 관련 법규 준수 및 불공정거래 행위 예방을 통해 공정거래 질서를 확립하고 재단과 임직원을 법 위반으로부터 보호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제2조(기본원칙) CP 규칙은 재단 임직원이 수행하는 업무 관련 일체의 행위에 적용되며, 본 규칙에 반하는 재단의 방침 또는 규정이 있을 경우 CP 규칙이 우선 적용되어야 한다.

제3조(용어의 정의) CP 규칙에서 사용하는 주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CP란 ‘Compliance Program’의 약자로 공정거래 자율준수프로그램을 의미한다.
2. CP는 CP의 취지와 목적을 구체적으로 실천하기 위한 기준과 방법을 정의한 내부 준법 시스템을 뜻한다.
3. 자율준수는 임직원이 CP에서 정한 기준과 방법을 스스로 지키는 것을 의미한다.
4. 공정거래 관련 법규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등 공정거래위원회가 소관하고 있는 법률, 시행령, 고시, 지침을 의미한다.
5. 최고이사결정기구는 재단의 이사회에 해당한다.
6. 자율준수관리자는 재단의 CP 운영을 총괄하는 직원으로, 대표이사가 추천하고 이사회에서 임명한다.
7. 자율준수부서장은 자율준수관리자의 지시·감독을 받아 CP 운영에 관한 실무를 총괄하는 자를 뜻한다.
8. 공정거래 담당은 CP 운영 실무를 전담하는 부서에 해당한다.
9. 위험관리 부서는 업무 성격을 감안할 때 공정거래 관련 법규 위반 가능성이 높은 부서로서 자율준수관리자가 지정하는 부서를 뜻한다.

10. 임직원은 고용 형태나 종류와 무관하게 재단과 고용 계약을 체결한 모든 임원과 직원을 뜻한다.
11. 제재 조치는 임직원의 공정거래 관련 법규 위반 행위 및 CP 위반에 대한 책임을 묻는 행위로서, 징계의 절차 및 종류에 관하여는 재단 내부 규정으로 정한다.
12. 법 위반 행위는 공정거래 담당에서 공정거래 관련 법규 위반으로 판단한 행위로서, 행정기관, 사법기관, 기타 제3자에 의한 문제 제기 및 판단에 근거하지 않더라도 자율준수관리자가 법 위반 행위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13. 자율준수편람은 재단 임직원에게 CP의 이해 및 공정거래 관련 법규 준수 의식의 내재화 등을 위하여 CP 운영 기준, 절차, 사례 등 CP 관련 일체의 내용을 포함하여 제작한 지침서를 뜻한다.
14. 인센티브는 CP를 모범적으로 준수하여 공정한 거래 질서 확립에 기여한 임직원 또는 부서에 제공하는 혜택을 뜻한다.
15. 이해관계자는 재단과 거래하는 모든 고객, 거래처 등을 뜻한다.

제2장 조직 및 업무

제1절 최고경영자의 의무와 권한

제4조(최고경영자의 의무) ① 대표이사는 CP가 독립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자율준수관리자에게 권한을 부여하고, CP가 재단 운영의 최우선이 되는 정책임을 보장한다.

② 대표이사는 효과적인 CP 운영 및 제도 개선이 될 수 있도록 자율준수관리자 및 공정거래 담당에게 예산과 조직을 지속적으로 지원한다.

③ 대표이사는 공정거래 관련 법규 위반 및 자율준수 문화의 저해 행위 등 CP 목적에 반하는 행위에 대한 대응 방안을 마련한다.

④ 대표이사는 공정거래 자율준수 의지를 임직원에게 수시로 전달하고 스스로 준수한다.

제5조(최고경영자의 권한) ① 대표이사는 자율준수관리자를 추천하며, 이사회는 CP 운영 관련 최고의사결정권한을 가진다.

② 대표이사는 CP의 구축과 운영을 위하여 예산과 자원을 배분한다.

③ 대표이사는 CP 운영에 관한 임직원의 역할과 책임을 부여한다.

제2절 자율준수관리자의 임명 등

제6조(자율준수관리자의 임명) ① 대표이사와 이사회는 효과적인 CP 운영을 위해 공정거래 관련 법규 지식이 풍부하거나 CP를 포함한 준법경영에 경험과 지식을 갖춘 자를 자율준수관리자로 임명하여야 한다.

② 자율준수관리자는 대표이사의 추천을 받아 이사회에서 선임한다.

③ 자율준수관리자는 위험관리 부서와 이해관계가 상충하지 않는 부서에 소속되어야 한다.

④ 자율준수관리자가 부득이한 사정으로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대표이사가 그 직무를 대신하거나 새로운 자율준수관리자를 이사회에 다시 추천한다.

제7조(자율준수관리자의 권한) 자율준수관리자의 권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CP 및 공정거래 관련 법규 위반 행위에 대한 점검 및 조사권
2. 위 제1호에 해당하는 임직원에 대한 시정 요구 권한
3. 위 제1호에 해당하는 임직원 중 중대한 법 위반 행위자에 대한 징계의결 요구 권한
4. 기타 CP의 운영에 필요한 권한으로 대표이사로부터 위임받은 권한

제8조(자율준수관리자의 업무) 자율준수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CP 운영 관련 예산의 편성 및 변경 요구
2. 대표이사의 자율준수 의지 및 CP 기준과 절차의 대내외 공표
3. 자율준수편람의 제·개정
4. CP 관련 교육계획의 수립 및 시행
5. 내부감시체계의 운영
6. 임직원에 대한 공정거래 법규 위반 및 CP 준수 여부에 대한 점검 및 조사

7. 위 6호에 따라 공정거래 법규 위반이 확인된 임직원에 대한 제재
8. CP 운영 관련 인센티브 제도의 구축 및 대상 임직원의 선정
9. CP 관련 효과성 평가 및 다음 연도 CP 운영계획을 포함한 각종 경영계획에의 반영
10. 부서별 CP 담당자 지정

제9조(공정거래 담당의 업무) ① 공정거래 담당 소속 직원은 제8조 각 호에 따른 자율준수 관리자의 업무수행을 지원한다.

② 공정거래 담당은 위 제1항에 따른 업무 추진 현황을 자율준수관리자에게 연 1회 이상 보고하여야 하며, 재단의 CP 운영에 중대한 변화나 영향을 끼칠 사안이 있는 경우 별도로 보고할 수 있다.

제3절 임직원의 역할과 의무

제10조(임직원의 의무) CP와 관련하여 임직원의 의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정거래 관련 법규의 준수 및 자율준수편람에 대한 숙지
2. 공정거래 자율준수 실천 노력
3. 업무수행 중 확인한 공정거래 관련 법규 위반 가능성이 높은 행위에 대한 제보
4. 자율준수관리자가 부여한 CP 관련 교육 목표 달성

제11조(사전업무협의) ① 임직원은 다음 각 호의 사안을 수행할 경우 공정거래 담당과 반드시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1. 「경기문화재단 일상감사 운영 규칙」에 따른 일상감사 대상 업무
2. 공정거래 관련 법규 위반에 따른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 또는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의 분쟁 조정 신청 관련 자료 작성과 제출
3. 위 호 이외에 임직원 스스로 공정거래 관련 법규 위반 여부를 판단하기 어려운 업무의 수행

② 임직원은 사전업무협의 시 공정거래 담당에 전자문서 시스템을 활용하여야 하며, 임직

원이 원하는 경우 사전업무협의 전 공정거래 담당에 협의 대상 업무 여부 및 공정거래 관련 법규 적용 여부에 대하여 미리 협의를 요청할 수 있다.

제12조(사내제보) ① 임직원은 공정거래 관련 법규 위반 행위를 하였거나 그 행위를 직간접적으로 확인하였을 경우 이를 공정거래 담당 또는 자율준수관리자에게 즉시 제보하여야 한다.

② 사내제보와 관련해서는 「경기문화재단 공익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운영규칙」을 따른다.

제3장 CP의 운영 등

제1절 자율준수 의지의 천명

제13조(자율준수 의지의 천명) ① 대표이사는 재단의 CP 도입 및 운영 의지를 대내외에 공표하고 대표이사 본인을 포함한 임직원의 자율준수 의지를 천명하여야 한다.

② 위 제1항에 따른 공표 및 의지 천명은 누리집을 포함한 다양한 매체를 활용하여 연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하며, 공표 및 의지천명 대상에 임직원 및 기타 이해관계자가 모두 포함되어야 한다.

제2절 자율준수편람의 제작 및 교육

제14조(자율준수편람) ① 공정거래 담당은 자율준수편람을 제작하여 임직원에게 배포하여야 한다.

② 위 제1항에 따른 배포 시 위험관리 부서를 최우선으로 배포하여야 한다.

③ 공정거래 담당은 공정거래 관련 법규 개정 및 변경을 연 1회 이상 검토하여 그 결과 개선이 필요한 사항을 자율준수편람에 반영하고 그 내용을 대내외에 공개하여야 한다.

제15조(임직원에 대한 교육) ① 자율준수관리자는 임직원을 대상으로 한 CP 관련 연간 교육계획을 다음 각 호의 내용을 반드시 포함하여 수립하고 자율준수편람 등을 활용하여 교육을 시행하여야 한다.

1. 교육의 취지 및 목적

2. 교육 대상자 및 부서
3. 교육 전담강사의 지정 및 역할 정의
4. 교육내용 및 교재 활용 방안
5. 교육의 방법(온라인 / 오프라인 교육 구분 등)
6. 교육성과 평가 방법 및 후속조치 방안
7. 연간 교육일정

② 자율준수관리자는 위 제1항에 따른 계획 수립 시 대표이사와 관리자를 상대로 한 교육 과정과 공정거래 관련 법규 위반 가능성이 높은 직원 및 공정거래 법규 위반 직원 등을 대상으로 한 특별교육 및 보수교육 과정을 포함하여야 한다.

③ 공정거래 담당은 CP 교육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재단의 교육 전담 부서 협의 또는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교육 전담 부서는 부득이한 사정을 제외하고는 공정거래 담당의 지원 요청에 응해야 한다.

④ 자율준수관리자는 위 제1항에 따른 교육 시행 후 임직원의 이해수준 등 교육 효과성을 평가하고, 이를 통해 확인된 문제점을 다음 연도 교육 계획 수립 시 반영하여야 한다.

⑤ CP 관련 교육에 대하여 본 규칙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자율준수관리자가 별도로 정하고 공정거래 담당이 시행한다.

제3절 내부감시체계

제16조(내부감시체계) ① 재단은 일상 업무에서 공정거래 관련 법규 위반 행위를 상시 감시하고 행위가 발견되면 이를 내부에 신속하게 보고하고 조치하기 위한 내부감시체계를 다음 각 호와 같이 구축하고 운영하여야 한다.

1. 위험 평가
2. 사전업무협의제도
3. 직접보고체계
4. 사내제보시스템

② 자율준수관리자는 위 제1항에 따른 내부감시체계의 운영 결과를 연 2회 이상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17조(위험 평가) ① 자율준수관리자는 공정거래 담당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공정거래 관련 법규 위반 행위 발생 등 확인을 위한 위험 평가를 연 2회 이상 정기적으로 실시한 뒤 그 결과를 대표이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1차 사전 실태조사는 부서별로 지정된 자가 공정거래 담당이 제공하는 방법에 따라 업무 관련 공정거래 법규 위반 여부를 확인하여 공정거래 담당에 보고
2. 2차 현장 심층조사는 공정거래 담당이 위 제1호에 따른 보고 내용 또는 내부 제보를 통하여 확인된 공정거래 법규 위반 가능성이 있는 행위를 직접 조사

② 위 제1항에 따른 결과 보고 시 다음 각 호의 내용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

1. 실시 회차 및 기간
2. 시행의 주체(자율준수관리자 및 공정거래 담당, 외부 감사, 감사팀)
3. 평가 대상 부서(선정기준 포함)
4. 평가 결과(사업부서별, 임직원별 등)
5. 중간 이상 위험성을 발견 시 이를 경감하기 위한 조치
6. 기타 미비점 및 문제점 등에 대한 조치 방안

제18조(사전업무협의제도) ① 자율준수관리자는 임직원이 업무 수행 중 공정거래 법규 위반 행위를 방지하려는 목적으로 수행 업무에 대한 검토를 요청하는 경우 이를 검토하여 그 결과를 통지하여야 한다.

② 공정거래 담당은 위 제1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업무수행의 적정성 여부 등을 검토하여 그 결과를 전자문서 시스템을 통해 회신하여야 한다. 다만 업무의 성격상 시급한 의사결정이 필요한 경우 자율준수관리자와 사전에 협의하여 회신 기한을 따로 정할 수 있다.

③ 공정거래 담당은 위 제1항에 따른 협의 내용을 기록하고 관리하여야 하며, 사전업무협의 실적은 연 1회 이상 대표이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9조(직접보고체계) ① 자율준수관리자는 임직원의 명백한 공정거래 관련 법규 위반 행

위(자율준수관리자가 법 위반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한 행위를 포함한다)를 확인하였을 경우 그 시급성 및 중요도를 감안하여 유관부서에 관련 사실을 공유하거나 협조를 구하지 않고 직접 대표이사에게 보고할 수 있다.

② 대표이사는 위 제1항에 따른 보고 결과를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 문제점 해결 등을 위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20조(사내제보시스템) ① 자율준수관리자는 공정거래 관련 법규 위반 행위에 대해 제보하기 위한 절차 및 기준 등이 포함된 사내제보시스템을 공정거래 담당에 설치하여야 한다.

② 자율준수관리자는 위 제1항에 따라 설치된 사내제보시스템에 제보한 임직원이 타 부서의 보복, 차별, 인사상의 불이익 등을 받지 않도록 철저히 보호하여야 하며, 자율준수관리자 및 공정거래 담당 소속 직원은 제보 사실의 처리 목적 이외에는 어떠한 경우에도 비밀을 보장하여야 한다.

③ 자율준수관리자는 임직원이 제보한 내용이 공정거래 관련 법규 위반 예방에 기여하였다고 판단되는 경우 본 규칙 제22조에 따른 인센티브를 제공할 수 있다.

제4절 제재 및 인센티브

제21조(법위반 행위 임직원에 대한 제재) ① 자율준수관리자는 CP 운영 과정에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확인하였을 경우 지체없이 해당 임직원에 대한 징계의결 요구 등 제재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1. 임직원이 공정거래 관련 법규 위반 행위임을 인지하였음에도 자율준수관리자 또는 공정거래 담당과 사전 협의없이 업무를 강행한 경우
2. 임직원의 공정거래 관련 법규 위반 행위로 인하여 기업이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정조치, 과징금, 검찰 고발 및 그에 준하는 처분을 받았거나, 법원의 결정으로 인해 재단에 손해의 배상 등 금전적 피해를 끼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3. 위 제1호 또는 제2호 행위로 인해 제재 조치를 받은 후에도 동일하거나 유사한 법 위반 행위를 반복하는 과정에서 자율준수관리자 및 공정거래 담당이 그 사실을 객관적으로 확인한 경우

② 자율준수관리자는 CP 운영 과정에서 위 제1항에 따른 행위 이외의 공정거래 관련 법

규 위반 행위 또는 CP에 불성실하게 참여한 경우로서 경미하다고 판단할 경우 해당 임직원에게 대하여 경고 처분 등 제재 조치하고, 그 사실을 해당 임직원의 상급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공정거래 관련 법규 위반자에 대한 제재 절차, 방법, 기준 등 본 규칙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경기문화재단 직원경고등 처분에 관한 규칙」 및 「경기문화재단 징계절차 및 양정 등에 관한 규칙」을 따른다.

제22조(우수 임직원에 대한 인센티브) ① 자율준수관리자는 CP 활용을 통한 재단의 공정거래 관련 법규 위반 예방에 기여한 임직원 및 CP 교육 실적 우수 임직원 등 재단 내 공정거래 자율준수 문화 확산 및 CP 발전에 기여한 자에게 인센티브를 제공할 수 있다.

② 자율준수관리자는 위 제1항에 따른 인센티브로 「경기문화재단 취업규정」에 따른 포상을 실시할 수 있다.

③ 기타 인센티브제도 운영과 관련하여 본 규칙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자율준수관리자가 인사부서와 협의를 통해 시행한다.

제5절 효과성 평가 및 경영에의 반영

제23조(CP 운영의 효과성 평가) ① 자율준수관리자는 CP를 지속적이고 효과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CP 운영 관련 효과성 평가를 연 1회 이상 점검하고 그 결과를 활용하여 CP의 개선과 발전을 도모하여야 한다.

② CP 효과성 평가 시 다음 각 호의 내용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

1. CP에 대한 임직원들의 이해 및 인식 수준
2. 연간 CP 운영 계획 대비 실제 시행 성과
3. 내부감시체계의 운영 성과
4. CP 관련 교육성과
5. 공정거래 관련 법규 위반 행위의 발생 빈도 및 재단에 미친 영향
6. 공정거래 담당의 CP 업무 운영에 대한 임직원 만족도

7. CP규칙 및 자율준수편람 등 CP 운영 관련 기준의 제·개정을 통한 제도 개선 성과

8. 공정거래 담당 소관 예산 및 인력의 적정성

③ 자율준수관리자는 효과성 평가의 전문성 제고 등을 위해 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 CP등급평가를 신청하여 평가 등급을 취득하거나 외부 전문가 집단에 효과성 평가를 의뢰할 수 있다.

제24조(효과성 평가의 활용 등) ① 자율준수관리자는 본 규칙 제23조에 따른 효과성 평가 결과 및 개선 방안을 검토하여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 이사회는 위 제1항에 따른 보고 결과에 따라 임직원에 대한 인사 제재 조치, 예산과 조직 운영의 변경, CP 규칙 개정 추진을 의결하여 대표이사 또는 자율준수관리자에게 통지할 수 있으며, 이를 통지받은 대표이사 또는 자율준수관리자는 그 통지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③ 자율준수관리자는 위 제2항에 따른 조치 완료 시 그 결과를 재단 임직원에게 지체없이 공표하여야 한다.

제4장 기 타

제25조(문서관리) ① 공정거래 담당은 CP 운영에 관한 문서 일체를 자율준수관리자의 책임 하에 분류하고 보관하여야 한다.

② CP 관련 문서는 보존되어야 하며, 구체적인 보존 기간은 「경기문화재단 기록관리 규칙」을 따른다.

제26조(권한의 위임) 자율준수관리자는 본 규칙의 효과적인 시행 및 운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별도의 세부 지침을 마련하여 운영할 수 있다.

부 칙(제528호 규칙, 2024. 11. 11.)

이 규칙은 대표이사가 확정된 날부터 시행한다.